

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 반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함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1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**장**



1. 건 명 :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6. 11. ~ 2026. 6. 24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4층 고용관리과(분평동, 청주지방합동청사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고용관리과 주진영(043-299-11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불 임]

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

(단위: 원)

연번	사업장명	금액	주민(법인)등록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송달불능사유
1	(주)**이엔씨	1170000	150111*****	(34580) 대전 동구 성남로	독촉장	폐문부재
2	주식회사**컴퍼니	469690	150111*****	(28116) 충북 청주시 청원구	독촉장	수취 함투함
3	**철강(주)	390000	150111*****	(28123) 충북 청주시 청원구	독촉장	폐문부재

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5 년 6 월 11 일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

